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공사현장 장마철 피해 예방 특정감사 -

2020. 8.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경주시 ●●과	경주시 0000(000)개체공사 하자처리 부적정	시정	-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경주시 000(000) 개체공사 하자 처리 부적정	-	-	-	-	

3. 처분요구일람표

1) 경주시 000(000) 개체공사 하자 처리 부적정 (시정) 2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경주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경주시 000(000) 개체공사 하자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000(000) 개체공사를 [표]와 같이 (주)■■■■■■■■과 계약하여 완료한 사실이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기타			
000(000) 개체공사	교량 120m(B=36m)	14,100	5,100	8,200	800	2017.01.03.~ 2019.01.31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 후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도록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 ○○과에서는 000(000) 개체공사를 준공(2019.1.31.) 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하자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았으며(3회 중 2회 미실시),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는 물론 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시공하는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